

01

공공저작물 그리고 자유 이용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¹⁾)

저작권법이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물론이고 공공재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되는 저작물은 그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나 각종 준조세로 형성되는 기금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공익적인 관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그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등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은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도 공공저작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하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02

번역자료의 2차적 저작물성

번역이란 어문저작물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와는 계통과 종류를 달리하는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한편, 원저작물의 번역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그 번역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²⁾. 따라서 공공기관 등이 해외의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단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변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확한 내용 전달과 독자의 이해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하고 의역 등을 하면서 서술의 순서 등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였다면, 공공기관 등이 해외저작물을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03

해외저작물 번역과 원문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갖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저작권법 제22조³⁾)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이 외국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존재하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므로(저작권법 제37조⁴⁾), 번역 자료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04

해외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과 원문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해외 일부 국가 역시 다양한 형태의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번역하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 허락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제도는 저작물 생성의 재원을 공급한 국민들에게 저작물 이용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공공저작물 생성에 재원을 공급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이 해당 국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해당 국가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개방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이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국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번역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방하려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번역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3)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